

충청북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3조3항중 "보건사회국장, 농림국장, 식산국장, 보건환경연구소장"을 "보사환경국장
농어촌개발국장, 농림수산국장, 보건환경연구원장"으로 한다.